

신탁재산(주식) [] 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

공개대상자									
성명		소속			직위		직급 등		
순번	위탁자				주식명	신탁일자	수탁가액 (천원)	변동가액 (천원)	처분완료 여부 (처분일)
	성명 (관계)	소속	직위	직급 등		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8제2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(주식)이

[] 처분 완료 []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의 장

직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작성방법

1. '소속', '직위' 및 '직급 등' 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
2.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. [예:(배우자)]
3.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.
4.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,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.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.
5.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 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적으십시오.